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2. 1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6호, 2023. 2. 8.,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면제 받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사대상기기"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 "검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의 검사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검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면제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4.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6호,2023.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사유 또는 외교부훈령 여행경보제 도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2단계 이상 혹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조되는 경우로 검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고시 유효기간 만료 전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제작중인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이 고시에 따른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기존 고시의 폐지) 기존의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2021. 11. 23.)은 폐지한다. 단, 기존 고시 부칙 제4조(경과규정)에 따라 면제 신청한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